

#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##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1.

발의자 : 소병훈 · 서삼석 · 박정

유은혜 · 이찬열 · 유동수

이상현 · 김철민 · 임종성

인재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,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상품별로 현재 약 8%에 그치고 있음. 또한, 소방사업자의 약 88%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축사법」, 「전력기술관리법」 등 의 유사업종 입법례처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

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##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)

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국가
  2. 지방자치단체
 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17조의2(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)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p> <p>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</li> <li>2. 지방자치단체</li> <li>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</li> <li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</li> </ol>

는 기관 또는 단체

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 
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 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
으로 정한다.